

화성시 삼보폐광산 민·관·정 협의체 설치 · 운영에 관한 조례안

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23. 3. 9. 배현경의원 외 5명

나. 회 부 일 자 : 2023. 3. 9.

다. 상 정 일 자 : 제220회 화성시의회 임시회

제1차 기획행정위원회(2023. 3. 23. 상정, 원안가결)

2. 제안설명 요지(배현경 의원)

가. 제안이유

- 화성시 삼보폐광산 관련 환경 개선 및 주변지역 활성화 등 주요현안에 대하여 연속성을 가지고 논의하기 위하여 민·관·정 분야별 위원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설치·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임.

나. 주요내용

- 목적 및 협의체 설치·기능에 관한 사항 (안 제1조~제2조)
- 협의체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(안 제3조~제8조)
- 비밀준수에 관한 사항 (안 제9조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윤정자)

- 민·관·정 분야별 위원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설치·운영하여 주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등 제정안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 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생략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 요지 : 생략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화성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

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23. 3. 9. 박진섭의원 외 5명

나. 회 부 일 자 : 2023. 3. 9.

다. 상 정 일 자 : 제220회 화성시의회 임시회

제1차 기획행정위원회(2023. 3. 23. 상정, 원안가결)

2. 제안설명 요지(박진섭 의원)

가. 제안이유

-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66조의4제3항에 따라 지역 안전문화활동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, 안전보안관의 활동 내용과 교육,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안전보안관 위촉 등에 관한 사항 (안 제3조)
- 안전보안관 위촉 등에 관한 사항 (안 제3조)
- 안전보안관 활동에 관한 사항 (안 제4조)
- 안전보안관 교육에 관한 사항 (안 제5조)
- 안전보안관 관리 및 해촉에 관한 사항 (안 제6조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윤정자)

-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고 안전문화 확산 및 생활 속 안전 위협 요소를 저감하기 위한 제정안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 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5. 토론요지 : 생략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7. 소수의견 요지 : 생략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23. 3. 9. 화성시장

나. 회 부 일 자 : 2023. 3. 9.

다. 상 정 일 자 : 제220회 화성시의회 임시회

제1차 기획행정위원회(2023. 3. 23. 상정, 원안가결)

2. 제안설명 요지(정책기획과 유운호)

가. 제안이유

- 화성시 대중교통 혁신을 통한 시민의 이동권 보장의 성공적 추진과 동서균형발전의 초석 마련을 위한 합리적 인력배분을 통해 다양한 행정수요에 대응하려는 것임

나. 주요내용

- 집행기관 : 화성시 지방공무원의 총수를 2,829명에서 2,837명으로, 집행기관의 정원을 2,786명에서 2,787명으로,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을 43명에서 50명으로 조정(안 제2조)
-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 조정(안 제4조, 안 별표 3)
- 한시정원의 직급 및 운영시한 조정(안 제6조, 안 별표 4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윤정자)

-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고, 기준인력 및 가용인력 등을 고려한 인력 재배치를 통한 의회 운영 및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는 등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 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5. 토론요지 : 생략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7. 소수의견 요지 : 생략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화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23. 3. 9. 화성시장

나. 회 부 일 자 : 2023. 3. 9.

다. 상 정 일 자 : 제220회 화성시의회 임시회

제1차 기획행정위원회(2023. 3. 23. 상정, 원안가결)

2. 제안설명 요지(정책기획과 유운호)

가. 제안이유

- 화성시 대중교통 혁신을 통한 시민의 이동권 보장의 성공적 추진과 동서균형발전의 초석 마련을 위한 기구 구성 및 합리적 사무배분으로 다양한 행정수요에 대응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내용

- (4급) 국(局) 단위 개편

1) 명칭변경 : 1단

본청(1)	1) 대중교통혁신추진단 ⇨ 교통사업단
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

- (5급) 과(課) 단위 개편

1) 신 설 : 1과

본청(1)	1) 교통사업단 트램건설과
-------	----------------

2) 이 관 : 1과

본청(1)	1) 대중교통혁신추진단 첨단교통과 ⇨ 교통도로국 첨단교통과
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3) 명칭변경 : 1과

본청(1)	1) 대중교통혁신추진단 철도트램과 ⇨ 교통사업단 철도전략과
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- (6급) 팀 단위 개편

1) 신 설 : 1팀

본청[1]	1) 철도전략과 철도건설지원
-------	-----------------

2) 이 관 : 4팀

본청[4]	1) 철도트램과 트램지원 ⇨ 트램건설과 트램지원 2) 철도트램과 트램건설 ⇨ 트램건설과 트램건설 3) 철도트램과 트램시스템 ⇨ 트램건설과 트램시스템 4) 철도트램과 트램차량설비 ⇨ 트램건설과 트램차량설비
-------	--

3) 명칭변경 : 2팀

본청[2]	1) 철도트램과 철도정책 ⇨ 철도전략과 철도전략 2) 경제정책과 일자리지원 ⇨ 경제정책과 일자리정책
-------	--

-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 조정(안 제4조, 안 별표 3)
- 한시정원의 직급 및 운영시한 조정(안 제6조, 안 별표 4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윤정자)

-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고, 대중교통 혁신을 통한 시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 됨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생략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 요지 : 생략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화성시 성인지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

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23. 3. 9. 김종복의원 외 5명

나. 회 부 일 자 : 2023. 3. 9.

다. 상 정 일 자 : 제220회 화성시의회 임시회

제1차 기획행정위원회(2023. 3. 23. 상정, 원안가결)

2. 제안설명 요지(김종복 의원)

가. 제안이유

- 예산안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편성에 반영하고 양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도록 하는 제도인 성인지예산제가 실질적으로 성차별을 개선하고 성평등을 증진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도록 실효성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조례의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함(안 제1조~제2조)
- 시장의 책무와 중점관리 사업에 관한 규정(안 제3조~제4조)
- 실무 지식 함양을 위한 지침을 마련에 관한 사항(안 제5조)
- 성인지예산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(안 제6조~제12조)
- 위원회 위원 및 소속 공무원 교육에 관한 사항(안 제13조)
- 시민참여 및 지원 관한 사항(안 제14조)
- 조사·연구·평가 등의 업무 위탁에 관한 사항(안 제15조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윤정자)

- 성인지예산제가 실질적으로 성차별을 개선하고 성평등을 증진하는 등 실효성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제정안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 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생략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 요지 : 생략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화성시 기부심사위원회 구성·운영 및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

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23. 3. 9. 오문섭의원 외 5명

나. 회 부 일 자 : 2023. 3. 9.

다. 상 정 일 자 : 제220회 화성시의회 임시회

제1차 기획행정위원회(2023. 3. 23. 상정, **수정가결**)

2. 제안설명 요지(오문섭 의원)

가. 제안이유

- 「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」에서 위임한 사항에 따라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·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, 명예의 전당, 표창 및 감사패, 감사행사 등 기부자 예우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으로써 화성시 기부자에 대한 명예를 높이고 건전한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조례의 목적 및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 (안 제1조~제2조)
- 위원회 구성·운영 및 심의요구 등에 관한 사항 (안 제3조~제8조)
- 기부자 관리 및 예우에 관한 사항 (안 제9조~제10조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윤정자)

-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고, 화성시 기부자에 대한 명예를 높이고 건전한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제정안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 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생략

6. 심사결과 : 수정가결

7. 수정안 요지 : 수정동의 발의 - 오문섭 의원

- 이번년도 기부자부터 소급적용할 필요성이 있어 조례안 부칙의 제2조 경과조치 제2항 ‘조례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받은 기부자로부터 적용한다’ 로 수정

※ 수정대비표 별첨

7. 소수의견 요지 : 생략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화성시와 전라북도 남원시 간 자매결연

협정체결 사전 동의안

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23. 3. 9. 화성시장

나. 회 부 일 자 : 2023. 3. 9.

다. 상 정 일 자 : 제220회 화성시의회 임시회

제1차 기획행정위원회(2023. 3. 23. 상정, 원안가결)

2. 제안설명 요지(행정지원과 김성현)

가. 제안이유

- 화성시와 전라북도 남원시 간 자매결연 협정 체결을 위하여 「화성시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」 제7조에 따라 사전에 화성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

나. 주요내용

○ 협정체결 필요성

- 가. 호남과 영남을 연결하는 내륙의 관문인 남원시는 춘향테마파크, 시립어린이합창단, 시립국악단, 시립미술관 등 풍부한 문화자원과 다양한 축제가 어우러진 문화 관광의 도시임
- 나. 교류를 통해 서로의 우수시책을 공유하고 양 도시가 상생·발전할 수 있는 관계를 구축
- 다. 양 자치단체 간 자매결연을 통해 행정, 경제, 교육, 문화,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함으로써 공동 발전 및 우호 증진 도모

○ 협정의 주요 내용

「양 도시 간 이해와 우의 증진을 위한 상호주의 교류협력에 대한 합의」

가. 상호 간 발전과 번영을 위하여 행정, 문화, 교육, 산업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상호 협력 사업 추진

나. 양 도시 간 협력과 이해증진을 위해 문화예술, 청소년, 스포츠 등의 교류에 적극 협조

다. 상호 간 지속적인 연락을 통해 구체적인 교류 협력 사업 발굴 및 긴밀한 협력관계 유지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윤정자)

○ 전라북도 남원시 면적은 752km²로의 도농복합도시로 우리 시와 비슷하고 상호보완성, 협력 및 우호증진, 교류 실익 기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였을 때 동의안의 취지와 내용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생략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 요지 : 생략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(안)

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23. 3. 9. 화성시장

나. 회 부 일 자 : 2023. 3. 9.

다. 상 정 일 자 : 제220회 화성시의회 임시회

제1차 기획행정위원회(2023. 3. 23. 상정, 원안가결)

2. 제안설명 요지(회계과 이은형)

가. 제안이유

○ 남양5배수지 증설사업(변경)

- 남양5배수지 급수구역 내 상수도 수요증가에 따라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상수도 공급을 위하여 배수지를 증설하고자 함.

○ 봉담내리 배수지 축조사업

- 내리지구 개발계획 등으로 상수도 수요증가에 따라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상수도 공급을 위하여 배수지를 축조하고자 함.

○ 안녕배수지 축조사업

- 안녕동 일대 상수도 수요증가에 따라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상수도 공급을 위하여 배수지를 축조하고자 함.

○ 팔탄구장배수지 증설사업

- 팔탄면 급수구역 내 상수도 수요증가에 따라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상수도 공급을 위하여 배수지를 증설하고자 함.

○ 여울공원 전시온실(식물원) 건립사업

- 아열대·지중해성 식물 전시 및 사계절 문화체험 등 생태복합 문화공간 여건 마련을 통한 시민의 여가 활동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여울공원 내 전시온실을 건립하고자 함.

○ 화성그린환경센터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

- 환경부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 지원 프로그램 선정에 따라 화성그린환경센터 내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하고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고자 함.

○ 동탄 도시철도(트램) 차량 제작구입

- 선진 교통체계 도입으로 대중 교통의 편의성을 제공하고 수도권 녹색 대중교통체계 구축을 위하여 동탄 도시철도(트램)을 구축하고자 함.

○ 매장문화재 보존유적지 토지매입

- 매장문화재 보조조치 유적 내 사유지를 매입하여 재산권 제한에 따른 민원을 해소하고 문화재 발굴조사 및 장기적인 보존 대책 수립을 통한 역사문화 정체성을 확립하고자 함.

○ 동탄2 실내 배드민턴장 건립(변경)

- 동탄2신도시 내 배드민턴 전용 실내체육시설을 확충하여 양질의 시민 체육 서비스 제공하고자 함.

○ (가칭)화성시립 요양원 건립사업

- 장기요양 수요증가에 따라 공공성 있는 표준 모델을 제시하고 장기요양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하여 화성시립 요양원을 건립하고자 함.

○ 남양읍 행정복지센터 건립사업

- 남양읍의 급속한 도시여건 변화와 인구증가에 대응하고 다양한 행정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남양읍 청사를 신축 건립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○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취득 재산

(단위 : m², 천원)

일련 번호	재 산 표 시			재산가액	취득시기	취득사유	소관부서
	구분	소 재 지	수량 (면적)				
계	토지		111,177	14,321,664			
	건물		24,352	104,271,104			
	기타		47,039	238,007,504			

일련 번호	재 산 표 시			재산가액	취득시기	취득사유	소관부서
	구분	소 재 지	수량 (면적)				
1	토지 건물 기타	남양리 산25번지 일원	17,373 320 4,000	1,115,944 1,089,600 8,253,100	2023년 2027년 2027년	남양5배수지 증설사업(변경)	맑은물 시설과
2	토지 건물 기타	내리 산116번지 일원	11,527 76.61 16,000	285,328 187,100 27,328,900	2023년 2025년 2025년	봉담내리배수지 축조사업	맑은물 시설과
3	토지 건물 기타	안녕동 산60-48번지 일원	44,453 415.8 12,000	7,458,886 561,300 20,014,900	2023년 2025년 2025년	안녕배수지 축조사업	맑은물 시설과
4	토지 건물 기타	구장리 1015-11번지 일원	24,575 304.9 10,000	852,656 23,096 17,922,604	2023년 2025년 2025년	팔탄구장배수지 증설사업	맑은물 시설과
5	토지 건물 기타	- 오산동 1060 -	- 8,000 -	- 38,900,000 -	- 2025년 -	여울공원 전시온실(식물원) 건립사업	공원조성과
6	토지 건물 기타	- - 봉담읍 하가등안길 100	- - 5,000	- - 1,088,000	- - 2023	화성그린환경센터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	자원순환과
7	토지 건물 기타	- - 병점역-동탄역 일원	- - 39	- - 163,400,000	- - 2027	동탄 도시철도(트램) 차량 제작구입	철도트램과
8	토지 건물 기타	요리 301-4 외 1필지 - -	9,031 - -	619,044 - -	2023 - -	매장문화재 보존유적지 토지매입	문화유산과
9	토지 건물 기타	- 오산동 1041-1번지 일원 -	- 4,670 -	- 16,753,000 -	- 2023 -	동탄2 실내 배드민턴장 건립(변경)	체육진흥과
10	토지 건물 기타	향남읍 하길리 1513 - -	4,218 5,400 -	3,989,806 24,957,008 -	2023 2025 -	(가칭)화성시립 요양원 건립사업	중장년 노인복지과
11	토지 건물 기타	- 남양읍 남양리 1340 -	- 5,165 -	- 21,800,000 -	- 2026 -	남양읍 행정복지센터 건립사업	회 계 과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윤정자)

○ 남양5배수지 증설사업(변경)

- 본 계획안은 기존 배수지 시설 노후화 정도를 고려하고 사업비 절감을 위해 기존 순차적 2회 증설 계획에서 1회 증설 계획으로 변경하는 사항으로,
- 기존 배수지 부지를 철거하여 부지 내 체육시설 설치로 주민복지를 향상하고 급수구역 내 개발 수요 증가를 대응하기 위하여 증설부지를 확보하는 등 적절한 계획안으로 판단 됨.

○ 봉담내리 배수지 축조사업

- 본 계획안은 내리지구 개발계획 등으로 급수 수요량 증가에 따라 안정적인 상수도 공급을 위하여 배수지를 축조하는 사업으로,
- 장래 용수 수요량 증가에 따른 대규모 용수의 수요량 충족으로 안정적인 용수를 공급하는 등 적절한 계획안으로 판단됨.

○ 안녕배수지 축조사업

- 본 계획안은 안녕동 일대를 공급 중인 배양 배수지 체류시간 부족으로 안정적인 상수도 공급을 위하여 배수지를 축조하는 사업으로,
- 안녕동배수지 축조 부지를 활용하고 배수지 상부 체육시설 설치로 주민 복지를 향상하는 등 적절한 계획안으로 판단됨.

○ 팔탄구장배수지 증설사업

- 본 계획안은 팔탄면 급수구역 내 대규모 개발계획에 따라 대규모 용수 수요량을 충족하기 위하여 배수지를 증설하는 사업으로,
- 팔탄 구장배수지 일부 부지를 활용하고 배수지 증설로 급수구역 확대로 원활한 급수체계를 수립하는 등 적절한 계획안으로 판단됨.

○ 여울공원 전시온실(식물원) 건립사업

- 본 계획안은 생태 문화도시 구축 기틀을 마련하고 아열대·지중해성 식물 전시 및 사계절 문화체험 등 생태복합 문화공간 여건 마련을 위하여 전시온실(식물원)을 건립하는 사업으로,
- 전시온실을 활용한 여가문화 공간을 확충하고 다양한 콘텐츠 도입을 통한 이색적인 생태복합문화공간을 마련하는 등 적절한 계획안으로 판단됨.

○ 화성그린환경센터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

- 본 계획안은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로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고자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하는 사업으로,
- 건물 옥상에 태양광 발전 설치로 부지 매입비용을 절감하고 화석연료 사용 감소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효과, 협오시설 부정 인식을 개선하는 등 적절한 계획안으로 판단됨.

○ 동탄 도시철도(트램) 차량 제작구입

- 본 계획안은 선진 교통체계 도입으로 대중 교통의 편의성 및 수도권 녹색 대중 교통체계를 구축하고자 도시철도(트램) 차량을 제작 구입하는 사항으로,
- 동탄 도시철도(트램) 구축으로 시민에게 친환경 교통수단을 제공하고 승용차 위주의 교통체계를 친환경 대중교통 체계로 개선하여 동탄신도시 도시 경쟁력을 향상하는 등 적절한 계획안으로 판단됨.

○ 매장문화재 보존유적지 토지매입

- 본 계획안은 매장문화재 보존조치 유적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보호·관리를 위하여 보존유적지 토지를 매입하는 사항으로,
- 중요유적을 보호하고 보존대책 수립을 통하여 역사문화 정체성을 확립하는 등 적절한 계획안으로 판단됨.

○ 동탄2 실내 배드민턴장 건립(변경)

- 본 계획안은 배드민턴 전용 실내체육시설을 확충하고자 추진한 사업이나 건축 연면적 및 물가상승으로 인한 공사비가 상승하고 공사 기간 연장에 따른 감리비 등이 증가하여 실내 배드민턴장 건립 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으로,
- 차별화된 외관 및 최신 설비를 적용하여 체육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는 등 적절한 계획안으로 판단됨.

○ (가칭)화성시립 요양원 건립사업

- 본 계획안은 인구 고령화 시대를 맞이하여 장기요양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요양원을 건립하는 사항으로,
- 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보호자에게 경제적 및 사회적 활동 계기를 마련하고, 건립에 따른 장기요양서비스의 질을 향상하는 등 적절한 계획안으로 판단됨.

○ 남양읍 행정복지센터 건립사업

- 본 계획안은 남양읍의 급속한 도시여건 변화와 인구증가에 대응하고 다양한 행정·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후화된 남양읍청사를 신축 건립하는 사항으로
-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만족도를 향상하며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적절한 계획안으로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생략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 요지 : 생략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